

학생 준칙

2003. 06. 27. 전면개정	2011. 07. 01. 부분개정
2005. 07. 01. 부분개정	2016. 04. 01. 부분개정
2007. 06. 30. 부분개정	2017. 05. 01. 부분개정
2008. 02. 27. 부분개정	2020. 01. 01. 부분개정
2009. 06. 30. 전면개정	2022. 12. 01. 부분개정
2010. 08. 01. 전면개정	2024. 03.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학칙에 근거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하며 교시에 입각한 학생 자치 활동의 실천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학생은 각종 학내·외 활동에 있어서 대학 학칙과 학생자치기구 운영 규정을 준수하고 학생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장 학생단체 및 학생활동

제3조(학생단체) 학생단체라 함은 총학생회, 대의원회, 졸업준비위원회, 일반동아리 연합회 및 등록된 각종 동아리를 말한다.

제4조(기능) 학생단체는 다음 각 호의 학생활동을 할 수 있다.

1. 학술 연구 활동
2. 예술 및 체육 활동
3. 각종 봉사 활동
4. 대학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 활동
5. 기타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친목 등 학생자치 활동

제5조(설립요건) 학생단체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활동목적이 학칙 제12장(학생활동) 및 학생자치기구 운영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3. 단체설립에 찬성하는 10명 이상의 학생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지도교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단체등록) 학생단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학생·취업처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1. 학생단체 등록신청서 1부(학생·취업처 소정양식)<개정 2017.05.01., 2020.01.01.>
2. 회원명단 1부
3. 단체규약 또는 회칙 1부

4. 지도교수 인정서 1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설립시기) 등록신청을 마친 학생단체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취업처장이 공고한 때부터 학생단체로 인정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8조(등록갱신) ①학생단체의 존속기간은 공고 이후부터 익년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총학생회는 당해년도 12월 말까지로 한다.<개정 2016.04.01.>

②계속 활동을 원하는 학생단체는 매 학년도(3월) 초 등록기간에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학생단체의 전 학년도 활동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등록갱신이 없는 학생단체는 당해 학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변경등록) 학생단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명령) ①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학생단체의 임원 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단체활동이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
2. 단체활동이 학내 질서를 문란케 할 때
3. 단체활동이 부진할 때
4. 기타 단체의 존속을 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②총장은 ①항의 경우에 학생단체의 임원을 처벌할 수 있다.

제11조(학생활동의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집회를 갖고자 할 경우는 학생행사 및 게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활동 금지) ①학생은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②불온(불법)단체조직, 불온 유인물 배포 및 게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학생행사 및 게시신고서) ①제11조의 학생활동의 사전신고 신청은 학생·취업처 소정 양식에 의하여 행사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단, 등록된 학생단체의 정기행사는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②학생행사 및 게시 신고서 서식에는 행사계획, 게시사항, 기타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학생·취업처장은 학생행사 및 게시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생행사 및 게시신고서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05.01., 2020.01.01.>

제14조(게시물) ①학생이 개인 또는 단체의 명의로 광고, 게시물을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취업처에 학생행사 및 게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②모든 게시물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게시 기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모든 게시물의 규격은 모조 1/2절지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생·취업처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15조(간행물 발행) ①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발간하는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지도위원)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교외행사 참가) ①학생으로서 교외행사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학생·취

업처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②행사 참가 후에는 반드시 그 결과를 학생·취업처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3장 학생증

제17조(발급) 신입생은 입학절차를 완료한 즉시 학생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제18조(효력) 학생증은 등록을 완료한 자로서 재학 중일 경우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

제19조(소지) ①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학생증을 휴대하지 않은 자는 도서열람실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제20조(대여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21조(재발급)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학생·취업처(해당은행)에 재발급 신청 하여야 하며, 재발급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제4장 포상

제22조(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사실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 만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포상한다.

1.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학생단체 소속 학생 중 그 공로가 현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개정 2016.04.01.>
3.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또는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대상, 금상, 은상, 동상) 및 장관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제23조(졸업포상 종류 및 기준) ①졸업 포상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청운상 :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종합성적이 전체 졸업생 중 1위인 자
2. 최우수상 :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종합성적이 학과에서 1위인 자
3. 우수상 :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학과 반에서 1위인 자
4. 공로상 : 품행이 방정하고 학생자치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재학 중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대상, 금상, 은상, 동상) 및 장관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자

②포상 종류 및 인원은 졸업사정회의에서 심의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포상자 선정) 포상자는 학과 학과장이 추천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졸업 수상자는 졸업사정회의에서 선정한다.

제5장 학생지도위원회

제25조(학생지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총장은 학생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②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2인 내외로 한다.<개정 2024.03.01.>

③위원장은 학생·취업처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학부장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학생·취업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05.01., 2020.01.01., 2024.03.01.>

④학생지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기능)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검토·조정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편제에 관한 사항
3. 삭제<개정 2024.03.01.>
4. 학생회비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24.03.01.>
5. 학생자치활동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6.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7. 학생자치활동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학생서비스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의결) 학생지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삭제 <2022.12.01.>

제28조 삭제 <2022.12.01.>

제7장 삭제 <2022.12.01.>

제29조 삭제 <2022.12.01.>

제30조 삭제 <2022.12.01.>

제31조 삭제 <2022.12.01.>

제32조 삭제 <2022.12.01.>

제33조 삭제 <2022.12.01.>

제34조 삭제 <2022.12.01.>

제35조 삭제 <2022.12.01.>

제36조 삭제 <2022.12.01.>

제8장 증명발급

제37조(증명서의 종류) 학칙시행세칙 제68조(증명서의 종류)에 따른다.

제38조(발급신청) 학칙시행세칙 제69조(발급구분), 제70조(발급절차), 제71조(증명발급수수료)의 규정에 의하여 제 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교무처에 비치되어 있는 소정의 양식에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준칙은 2024년 03월 1일부터 시행한다.